



**정원선 (Won Sun Jung)**

로컬 파트너, 서울

T +82 2 6138 8812  
+82 10 4018 5376  
E wonsun.jung@whitecase.com

**자격**

뉴욕주 변호사, 미국  
외국법자문사, 대한민국

**학력**

예일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(2003)  
서울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(2014)  
고려대학교 학사 (1999)

**언어**

영어  
한국어

정원선 변호사는 화이트 & 케이스 서울사무소의 로컬 파트너 변호사이자 글로벌 기업/인수합병그룹 소속 변호사입니다.

정 변호사는 민간·공기업, 사모펀드, 투자자 등에 기업 인수합병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, 자회사 설립, 하청 및 유통계약을 통한 해외사업 확장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. 또한 SEC 등록주 발행, Rule 144A 및 Regulation S에 따른 주식발행, 고수익채권 발행 등 광범위한 자본시장 거래에서 발행인 및 증권인수인을 대리하였습니다.

정 변호사의 최근 대표적 업무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.

- The Blackstone Group의 미화 260억불 규모 Hilton Hotels Corporation 인수 자문 포함 Kohlberg Kravis Roberts & Co., The Blackstone Group 등 사모펀드 스폰서를 대리하여 기업 인수합병 및 사모펀드 거래 자문 \*
- 채권단 및 사모펀드 스폰서를 대리하여 여신한도거래 (secured revolving credit facilities) 및 텀 론 (term loan) 계약, LBO 입찰 협약서 (LBO bid commitment papers) 관련 자문 \*
- 증권/채권 발행인 및 증권인수인을 대리하여 미국 국내외 기업, 정부 유관 기관, 투자은행이 참여하는 SEC 등록주 발행, Rule 144A 및 Regulation S 주식 발행, 고수익채권 발행, 기업어음 발행 등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자문. 그 외 미국 증권법 및 SEC 관련 사안, 기업지배구조 포함 일반 기업법 자문 다수 \*
- 증권/채권 발행인 및 매니저를 대리하여 채권공매, 교환오퍼, 증권계약 변경 관련 딜러 매니저, 대행사 혹은 발행인으로 참여하는 투자은행 자문 등 채무관리 관련 자문 \*
- 한·중 발행인 및 증권인수인의 법률대리인으로 Rule 144A, Regulation S 및 D의 적용을 받는 해외 채권/주식 거래 자문. 중기채 프로그램 구축 및 해외와 144A, Reg. S 및 D 채권 공매 관련 증권인수인 자문 \*

\* 화이트 & 케이스 입사 전 경력